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24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기준(EPI) 중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항목의 채택을 의무화하고,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 대상으로 성능기준(1차 에너지소요량)을 기존 200kWh/㎡년에서 150kWh/㎡년 미만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자립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090/4091)

- 팩스 : 044-201-5574(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 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